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23-68호
2023. 11. 17.(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93호) 1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3-115호) 4

공 고(5)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3-1165호) 5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1174호) 7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3-1175호) 8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1183호) 10
-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공사완료 공고(공고 제2023-1189호) 11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1173호) ... 13

공 람																			
--------	--	--	--	--	--	--	--	--	--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
에 발령한다.

202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9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셋째자녀”를 “둘째자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결혼축하포인트: 당해연도에 결혼을 한 공무원에게 100점을 배정한다. 다만,
재직중 1회에 한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에게만 배정한다.

6. 출산축하포인트: 출산을 한 공무원에게 매 출산시 100점을 배정한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1인에게만 배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가산되지”를 “가산하지”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혼·출산축하포인트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로 부여하며 신청기한은 혼인·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축하포인트 및 출산축하포인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24. 1. 1. 이후 발생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축하포인트를 신설하는 등 복지포인트 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다자녀포인트 배정기준을 변경함(제10조제1항제4호).
 - 다자녀포인트 100점을 셋째자녀에서 둘째자녀 이후로 완화 배정함.
- 나. 결혼축하포인트를 신설함(제10조제1항제5호).
 -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100점 배정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에게만 배정함.
- 나. 출산축하포인트를 신설함(제10조제1항제6호).
 - 매 출산시 100점 배정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1인에게만 배정함.
- 라. 결혼·출산축하포인트 부여 기준일을 정함(제11조제5항).
 - 결혼·출산축하포인트는 사유 발생시 추가 배정하며 신청기한은 혼인·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상서동 324-15	새말1길 23	2023. 11. 17.	건물신축	옛 지명(새말) 명칭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75-43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하는 사항

위 치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대화동 275-43번지	4㎡	4㎡	전0호	동의	-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 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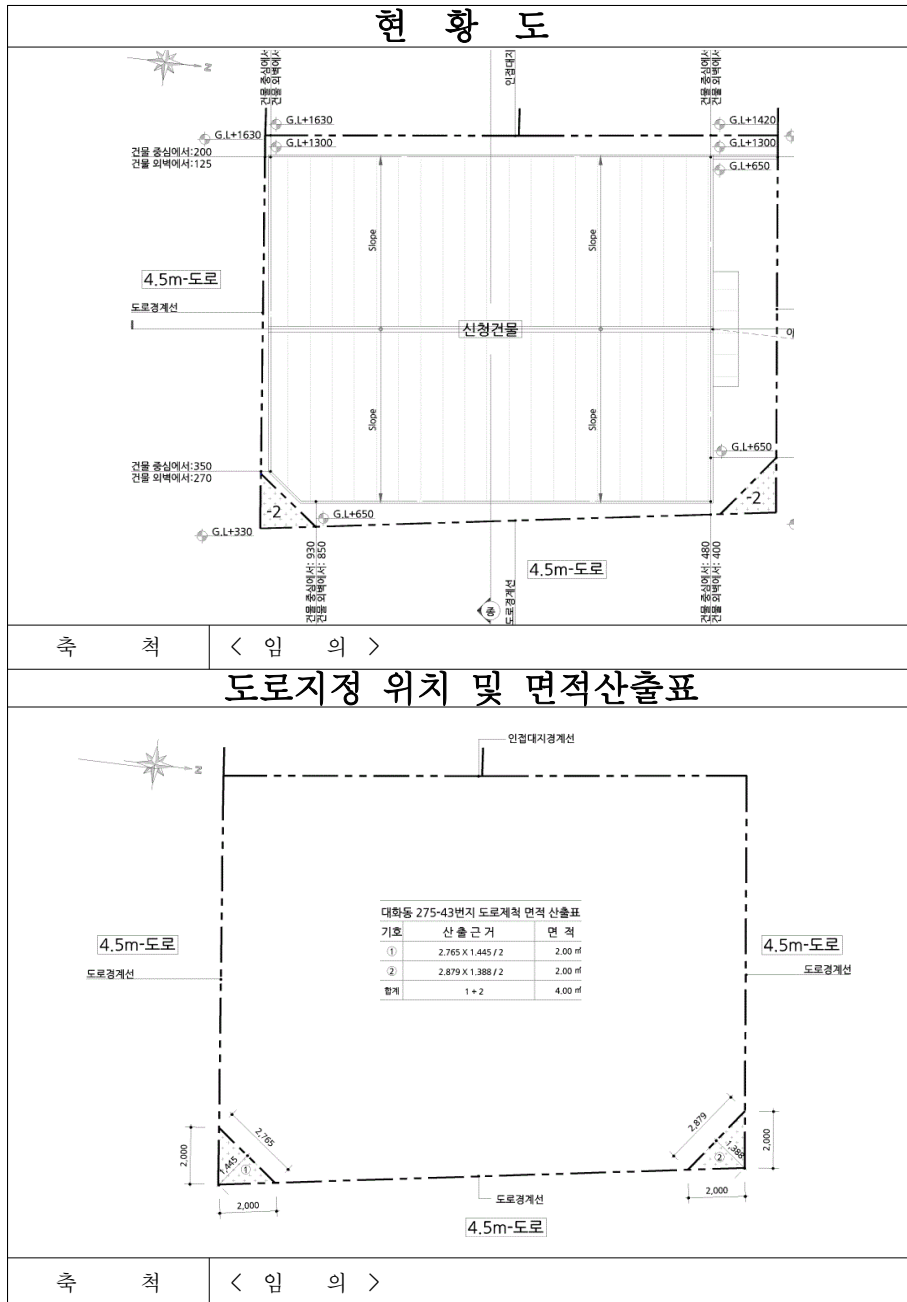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3. 11. 17. ~ 2023. 12. 1. (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대덕구 중리로76번길 12 (중리동) / 셀렌포크 (최○규)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셀렌포크 (사업자등록 폐업일 2015. 12. 31.)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식품유통팀 ☎(042)608 - 6964. 끝.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36-6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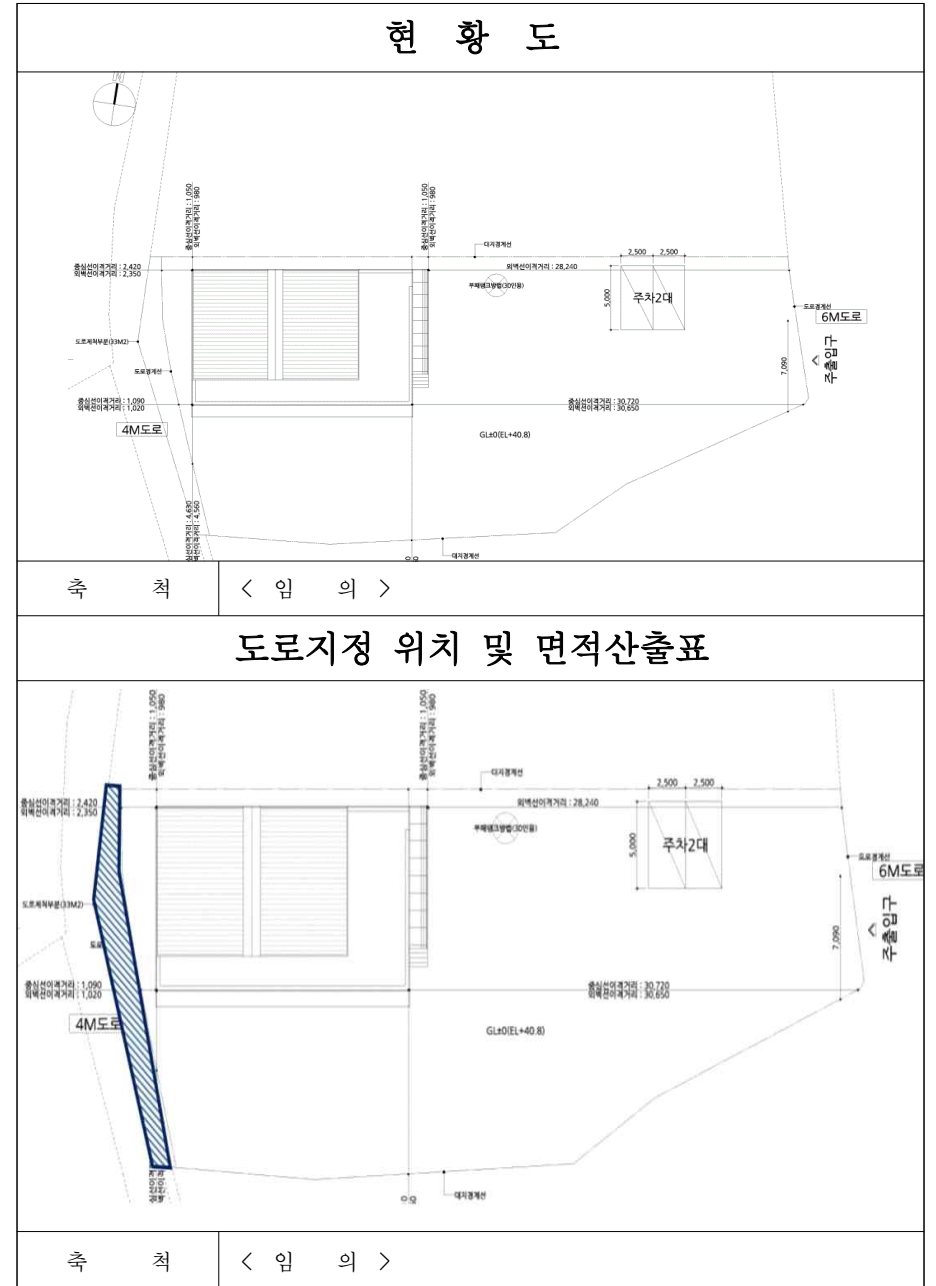
202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3. 공고기간 : 2023. 11. 17. ~ 2023. 12. 2.(15일간)
4. 공고대상

소재지	지적 (㎡)	편입면적 (㎡)	지목	소유자		이관계 동의여부
				주소	성명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36-6번지	992	33	답	주소생략	김**	동의
	계	33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대덕구청 건축과로 의견(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 건축허가팀(☎042-608-5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3. 11. 17. ~ 2023. 12. 1.(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우리네식당 (전0단) / 대전 대덕구 오정로42번길 79, 2층 (오정동)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우리네식당(사업자등록 폐업일 2012. 4. 10.)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2. 끝.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공사완료 공고

1.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대덕구 고시 제2022-20(2022.3.25.)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한 광학전자부품 시험동 건립공사 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8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연구시설)
 - 2). 명칭 : 광학전자부품 시험동 건립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국방기술품질원
 -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면적 : 97,043.6㎡
- 2). 사업의 규모
 - 토지이용계획

구분	대지면적	건축부지	도로 및 주차장	광장부지	조경부지	자연녹지	비고
	97,043.6	4,141.60	6,378.76	2,843.02	14,302.27	69,377.95	

- 건축물 건축

구분	구분	기 존	금회공사분	합 계	
건 축	건축면적	3,029.25㎡	1,112.35㎡	4,141.60㎡	
	연면적	10,134.67㎡	1,622.42㎡	11,757.09㎡	
	용적률 산정용면적	7,489.86㎡	1,105.14㎡	8,595.00㎡	
규	건폐율	3.12%	1.15%	4.27%	법정:20%이하
	용적률	7.72%	1.14%	8.86%	법정:80%이하
모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최고높이	22.60m	8.50m		
주차대수		103대 (장애인전용 포함)	5대	108대	

- 5. 사업 시행기간 : 인가고시일. ~ 2023. 11. 30.
-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117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재량위임한 세부 허가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완화된 규제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여 변경함(안 별표).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기준(4m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완화함.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별표 1)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의 허가기준(별표 2)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비함(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에너지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에너지산업과(전화 : 042-608-6933, FAX : 042-608-3837, E-mail : lina2014@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전화 : 042-608-69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세 부 기 준	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설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시설기준 ○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한다. ○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그 한 면이 폭 16미터 이상인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설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시설기준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설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제7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제3조(허가기준 등) ----- ----- ----- ----- <u>별표</u> ----- -----.
<u>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 별표 1</u>	<삭 제>
<u>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의 허가기준: 별표 2</u>	<삭 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